디지털 자산 관련 라이선스 유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디지털 자산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그 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분야는 여섯 가지 규제체계가 포괄합니다.

활동	법률	라이선스 또는 지위	감독 관점
디지털 지급 토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 교환의 중개	2019년 지급서비스법 (Payment Services Act 2019)	표준 지급기관 또는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DPT 서비스)	지급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전자화폐 또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2019년 지급서비스법(전자화폐, 그리고 입법이 이루어진 후의 스테이블코인 체계)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지급, 통화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매매 또는 운용; 토큰 거래소의 운영	2001년 증권선물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 승인 거래소 또는 인가 시장운영자	자본시장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활동	법률	라이선스 또는 지위	감독 관점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에 관한 자문	2001년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2001)	금융자문업 라이선스 또는 면제	영업행위
영업으로서 토큰을 신탁으로 보유	2005년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 2005)	신탁업 라이선스	건전성 및 영업행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밖의 고객에게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Part 9	DTSP 라이선스(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부여)	AML/CFT
예금(토큰화 예금 포함)의 수취	1970년 은행법(Banking Act 1970)	은행 라이선스	건전성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규제체계입니다. Section 5는 라이선스 없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Section 6은 환전업, 표준 지급기관, 주요 지급기관이라는 세 가지 라이선스 등급을 규정합니다. 라이선스 보유자가 처리하는 월평균 거래금액이 한 가지 지급서비스에서 300만 싱가포르달러를, 두 가지 이상의 지급서비스에서 6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면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일평균 전자화폐 잔액이 5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 Section 2(1)의 '디지털 지급 토큰' 정의에 따르면, 이는 단위로 표시되고, 어떠한 통화로도 표시되거나 연동되지 않으며, 공중이 수용하는 교환수단으로 의도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상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로 표시되고 금전의 수령을 대가로 발행되는 경우 전자화폐에 해당합니다.[2] 규제 범위에 대한 분석은 제K편 제I장에서 다룹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01년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SFA)은 자본시장상품, 즉 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승인 거래소 또는 인가 시장운영자여야 합니다. 딜러는 자본시장상품 매매에 관한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CMS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토큰을 보유하는 펀드의 운용자는 펀드운용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2020년판은 사례 연구를 통해 분류 방법을 설명하며, 자본시장 규제 범위에 관한 기준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3] 이 규제 체계는 제K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사례: 추크(Zug)의 한 GmbH가 자사의 탈중앙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싱가포르 자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고객에게 싱가포르달러를 받고 토큰을 판매하고, 고객의 토큰을 호스팅 지갑에 보관하려 합니다. 먼저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토큰은 어떠한 금융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내 교환수단으로 의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 이를 지급수단으로 수용한다면 2019년 지급서비스법상 디지털 지급 토큰에 해당합니다. MAS는 이 요건을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토큰을 법정통화를 대가로 판매하는 것은 '디지털 지급 토큰의 매매'입니다. 고객을 위해 토큰을 보유하는 것은 2024년 4월 4일부터 수탁형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자회사는 지급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기준금액 미만이면 표준 라이선스를, 초과하면 주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토큰이 자본시장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서비스법상 라이선스를 보유하므로 Part 9의 DTSP 라이선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석의 스위스 측면, 즉 추크의 GmbH가 자금세탁방지법(AMLA; GwG)상 금융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F편 제II장에서 다룹니다.

주

1. Payment Services Act 2019 (2020 Rev Ed), s. 5(라이선스 요건), s. 6(4)(b)(일곱 가지 지급서비스: 계좌 발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가맹점 매입, 전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화폐 발행,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환전) 및 s. 6(5)(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의 기준금액). Singapore Statutes Online에 게재된 조문 참조. ↩

2. Payment Services Act 2019, s. 2(1), 'digital payment token'의 정의(제외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상을 제외한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서, 단위로 표시되고, 어떠한 통화로도 표시되거나 연동되지 않으며, 공중이 수용하는 교환수단이거나 그렇게 의도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 ↩

3. MAS,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2017년 11월 14일 최초 발행, 2020년 5월 26일 최종 개정. 이는 증권선물법상 규제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의 공모가 규제될 것이라는 2017년 8월 1일 MAS의 설명에 기초합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